

2015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4차)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5. 1. 13.(화) 16:00~17:30
- 장 소 : 호암교수회관 에프와룸
- 참 석 : 위원 9명 중 7명 참석
 - 외부전문가 및 동문 : 백창현(위원장), 박광우 위원
 - 학교대표 :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
 - 학생대표 : 노경희, 양기원, 최광종 위원

2. 회의 안건

- 등록금심의위원회 지침 제정 논의
- 협의추천 위원 선정에 관한 논의

3. 전차 회의록 낭독 : 예산과장

- 위원장은 회의록 내용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접수하되 학생측 요청사항을 별첨하기로 함

4. 회의 내용

- 회의 내용
 - 2015학년도 제4차 등심위 주요 논의 사항 낭독
 -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 학생측: 등심위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이 재경위원회 등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가?
 - 대학측: 재경위원회 등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이 되고 필요할 경우 설명 자료가 될 수는 있음.
 - 학생측: 3차 회의록에 학생측 제안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해당 내용을 별첨하여 최종 공시하면 좋겠음.

<3차 회의록에 학생측 제안 내용을 별첨하여 최종 공시하는 것에 동의함>

- 학생측: 결산 자료 등을 요청함.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14년도 결산부터는 사립대 수준으로 공시하는게 맞는 것인가?
- 대학측: 아직 결산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공시 범위 및 수준에 대해서 규정대로 공시될 것임.
- 대학측: 등심위 지침 제정(안) 설명.
- 학생측: 학교측이 제시한 제2조의2 부분은 동의하지만 재경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또한 대학원생 총협의회는 학생처와 협의하여 만든 기구인데 제2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 대학측: 학생처장이 참석하지 않아 확답을 할 수는 없음. 총학생회를 단일 창구로 하되 대학원생 총협의회 포함 여부는 학생처장이 결정하는 것을 제안함.
- 학생측: 타 대학 등에 모범이 되는 차원에서도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 효력도 동일하다면 내부 지침 형태보다는 규정으로 공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측: 학칙 제113조 제4항에 비추어 지침 성격으로 제정하는 것을 제안함. 또한 제2조의 경우 학생위원은 총학생회 추천 위원 중 학생처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학생측: '12년도 등심위에서 총학생회가 학생위원 추천을 거부하여 학생처장이 임의 추천하여 결정한 사례가 있음.
- 대학측: 총학생회나 대학원생 총협의회에서 추천을 거부할 경우 등심위가 운영될 수 없기에 학생처장의 결정이 포함되어야 함. 대학원생 총협의회를 포함할지는 유보하고, 학생 측이 추천한 자로 하되 추천이 없을 경우 학생처장이 추천한자로 하는 방식을 제안함. 잔여 임기와 관련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기존 위원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것을 제안함.
- 학생측: 제2조의2는 월권이 아닌가?
- 대학측: 등록금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후 보고하는 의미임. 제3조는 '직무' 표현이 적절함. 제4조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학생측: '직무' 표현에 동의함. 제4조의 경우, 위원회 소집권자를 위원장으로 명시 필요 개최 불가시 그 사유를 명시할 문구 필요

- 대학측: 소집 일정이 긴박시 문제가 될 수 있음. 별도 조항을 통해 위원장은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소집하되 구성이 어려울 경우 사유를 소명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겠음.
- 학생측: 회의 개최 요건은 현행처럼 3분의 1 요건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대학측: 회의가 수시 개최될 우려가 있기에 과반수 요건이 합리적임.
- 학생측: 가부동수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면 이중 투표 문제가 있음.
- 대학측: 가부동수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임. 위원장의 이중 투표에 대한 지적은 타당함. 아울러 문서 보존기간은 일반적인 대학 문서보존 기간이 5년임을 고려할 때, 5년이 타당함.
- 학생측: 회의록 확인 차원에서 영구 보존을 제시한 것임.

<보존기간은 기간 명시 없이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제정하기로 합의>

- 학생측: 지난번 협의추천 위원 선출 간담회처럼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가 필요함.
- 대학측: 소위원회가 본 회의를 갈음할 수 없으며, 간담회가 실무적으로 유효하기에 굳이 소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음. 다만 별도 조항이 아니라 본 회의에서 결정하여 위임받는 형태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 및 예산과장만 간사로 두는 방안을 제안함.
- 학생측: 반드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학생측 간사로 두는 의미가 아니라 학생회에서 등록금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간사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대학측: 학칙상 등심위 운영 등은 총장이 결정하는 사안이기에 간사를 2명으로 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다른 위원회에서도 간사는 1명만 두고 있음.
- 학생측: 이 부분에 대하여 향후 추가 의견을 제시하겠음.
- 대학측: 제9조의 경우, 당초 대학측이 제시한 소집을 위한 정족수 요건과 학생측의 규정 개정을 위한 정족수 요건을 달리할 실익이 없음. 규정 개정은 학교와 학생측이 함께 논의하면 되며,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학생측: 제10조의 준용 규정의 경우 다른 대학도 동일한가?
- 대학측: 고등교육법 등 상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없음. 규정 혹은 지침으로 제정할지는 검토하겠음. 제2조 제2항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자를 원칙으로 하고, 추천이 안될 경우 학생처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겠음. 대학원생 총협의회는 학생처장의 의견과 논의가 필요함. 제2조의 2 부분도 소집 요구가 남발되지 않는 절차 규정이 필요함. 학생 측의 개최 요구시 신속하게 개최한다는 조항을 넣고, 개최 불가시 단서 조항을 두어 여지를 남기도록 하겠음. 가부동수시 위원장의 복수 투표를 방지하고, 간사 부분은 학생측이 대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소위원회는 근거 내용만 두는 것으로 하며, 위원장 궐위를 대비하기 위하여 신입 위원장 선출 때까지 기존 위원장이 계속 연임하는 것을 제안함.
- 학생측: 차기 협의추천 위원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이사회 등의 임기 규정을 준용하여 임시적으로 운영하되, 협의추천 위원에 대한 문제는 향후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 대학측: 위원장이 소집권자인데 위원장 궐위시에는 소집권자가 없어짐. 따라서 규정 제정을 하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학생측: 잔여 임기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시 운영하면 안되는 것인가?
- 대학측: 근거 규정이 없어 준용이 불가함. 차기 회의 소집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위원 임기 규정이 중요함. 현 회의에서 의결하여 규정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차기 회의를 소집하면 됨. 규정 개정만 발의하고, 총장에게는 사후 보고 · 승인하는 조건을 제시함.
- 학생측: 동의함. 아울러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요청함.
- 대학측: 검토 후 제공하겠음. 규정 제정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기존 협의추천 위원을 재추천함. 이에 대한 학생측 의견을 요청함.

- 학생측: 검토하도록 하겠음.
- 대학측: 학교측에서도 실무적 검토를 하고, 필요시 회의 소집 통보를 하겠음.

<규정 제정과 협의추천에 대한 논의는 실무 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함>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종결하기로 합의함>

2015. 1. 13.